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2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이종환, 강석주, 고광민,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박춘선, 오금란, 윤종복,
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
이종태, 임춘대, 황철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모든 스포츠 관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희롱·성폭력 없는 환경은 참가자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음. 또한, 성폭력의 피해는 선수들의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방해할 수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함.
이를 위해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인 협력과 공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, 명확한 정책 수립,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금의 용도에 '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신설'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용도에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신설함(안 제4조제7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현행 제4조제7호를 같은 조제8호로 한다.

7.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 7. (생략)	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</u> 8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(기금의 용도)제7호가 향후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사업의 재원마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해당 규정에 의해 직·간접적인 비용발생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(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) 확인결과 이는 예산을 통해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¹⁾이므로 서울시 전체 재정지출 순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**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**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명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기추진사업] 서울시 관광체육국 2025 <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> : 24,103,691천원

- 서울시 관련부서(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) 문의결과 서울시는 현재 해당 예산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는 해당 시보조금을 재원으로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을 추진(연간 91,800천원 소요)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- 또한 유선문의 및 각종자료 검토결과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 내용 중 성희롱·성폭력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기추진 사업으로 판단됨(※ 「2025년 서울특별시체육회」 스포츠 인권 향상 운영 계획(안)(서울시체육회, 2025. 1.))
- ⇒ 그러므로 현재 시 예산을 통해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해당규정에 의해 예산에서 기금으로 재원운영 방식이 변경된다 하더라도, 서울시 재정지출 총액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